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66

발의연월일: 2025. 3. 14.

발 의 자 : 민형배 • 이개호 • 김문수

정동영・양부남・안도걸

김동아 · 소병훈 · 김재원

민병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정부 업적 지우기에만 급급한 감사원을 개혁하고자 합니다. 현재 감사원은 숱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검찰과의 포렌식 공조, 대통령실 종속 심화, 장관급 인사 사퇴 압박, 감사 권한의 남용 등 정치보복행태가 심각합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되고, 민주적 통제는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3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위원 인선에서 시민전문가 추천제도를 도입합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98조는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때, 제청과 임명에 관한 구체적인절차는 「감사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정치적중립성이 요구되는 국가 최고 감사기구이자 사정기관입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를 구성하는 감사위원의 임명과정은 투명하

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이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감사위원 제청 및 임명과정에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감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민감사청구제는 직권남용이나예산 낭비 등의 부패 의혹이 있어도 국가기관이 나서지 않을 때, 국민들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감사원의 임·직원이 법 위반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시민들의 연서로 직접감사청구가 가능함을 이 법에 명확하게 적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원에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셋째, 감사위원회 의결과정의 투명한 공개입니다.

감사위원회 의결과정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은 모두 회의록에 명시해야 합니다. 현재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위원회의를 의결합니다. 이 경우 소수의견도 회의록에 명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는 주관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정답을 도출하려다 보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해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다양한결과를 정부와 시민에게 공개토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조의2,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48조2부터

제48조의6까지 신설).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원장이 제청할 감사위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원장이 감사위원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 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 3. 행정안전부차관
- 4. 학식과 덕망이 있고 시민사회 및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 경우 적어도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감사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⑤ 추천위원회는 감사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감사위원(제청할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감사위원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⑦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감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수의견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49조 앞의 "제4장 보칙"을 "제5장 보칙"으로 한다.

제48조 다음에 제4장(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국민감사청구

제48조의2(감사청구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감사원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감사

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원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 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 다)에 관한 사항
-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48조의3(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8조의4(감사실시의 결정) ① 원장은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청 구된 사항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원규칙으로 정 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 ② 원장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8조의5(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8조의6(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제5조의2(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원장이 제청할 감사위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원장이 감사위원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을 감사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기획재정부자관
	4. 학식과 덕망이 있고 시민사 회 및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 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 경

- 우 적어도 2명 이상은 여성이 어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감사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⑤ 추천위원회는 감사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감사 위원(제청할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감사 위원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 을 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하 여야 한다.
- ①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후보 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 다.
-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감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 으로 본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

제11조(의장 및 의결) ① (생 제11조(의장 및 의결)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후단 신설>

<<u>신</u> 설>

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세11조(의장 및 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이 경우 소수의견도 회의</u> 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국민감사청구

- 제48조의2(감사청구권) ① 18세이상의 국민은 감사원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연서로 원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관한 사항
 -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 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 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

<신 설>

<신 설>

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 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 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 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 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48조의3(감사청구의 방법) 감사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감사 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 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 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8조의4(감사실시의 결정) ① 원장은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접 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

	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
	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
	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48조의5(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기
	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
	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
	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48조의6(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u>제4장 보칙</u>	<u>제5장 보칙</u>